

일학습병행제 출결인정 검토 결과

1 배 경

- 예비군·민방위 훈련 및 결혼,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학습근로자가 결석을 하는 경우 출석인정 여부 등 학습근로자의 출결관리 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주요 문의 사항]

- ▶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
- ▶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면 훈련비는 받을 수 있는가?

- 공동훈련센터 OFF-JT의 경우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보강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방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

[주요 문의 사항]

- ▶ 결석자에 대한 보강으로 과제를 부여하여 훈련 진행이 가능한가?
- ▶ 1~2명 때문에 보강을 진행하기 어렵다.(외래강사 투입시) 훈련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 능력단위에 대한 이수를 위해서는 100% 출석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강을 받드시 진행해야하는 상황임

※ 현재 능력단위별 이수기준(훈련시간100%출석, 내부평가 pass)

※※ 향후 훈련프로그램이수기준(필수능력단위 80% 출석, 내부평가 pass) 변경 검토중

□ 지각·조퇴 발생시 훈련시간을 입력할 때 참여 시간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문의 증가

[주요 문의 사항]

- ▶ '5교시 훈련 중 지각을 했을 때, LMS에 훈련시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가 ?
- ▶ 출결에 대한 기준이 시간이라면, 몇 분 지각까지 출석 인정 하는 가?

⇒ 타 훈련사업은 출석률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훈련시간으로 출석률을 산정하고 있음

2 검토결과

□ 출석인정

- 학습근로자가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출석인정범위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하고 훈련비 지급함
 - 보충수업은 자율적 진행(추가 훈련비 지급 없음)하되, 필수 능력단위의 경우 가급적 보충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내·외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
- ※ 출석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이 발생하여,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충 훈련을 실시하면 보충된 시간만큼 훈련비 지급
- 훈련과정에 대해 비용 지급이 완료된 경우 출석인정 시간에 대해서 보강으로 훈련시간을 입력하고 비용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함
 - 비용 청구 이전의 출석인정범위 내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능력단위의 시간을 추가여 비용청구

□ 출석인정범위

구분	일학습병행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대상	일수	대상	일수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혼	본인	5일	본인	5일
	자녀	1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배우자	5일
휴가	적용안함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지각·조퇴에 따른 훈련시간 인정 기준

○ 단위 시간(1시간)의 50%(30분)이상 훈련에 참여했을 경우 시간 인정

- 타 직능사업에서의 기준 지각·조퇴 기준을 준용(1일 훈련시간에 100분의 50미만 출석은 결석으로 처리)하여 단위시간(1시간) 기준에 적용

예1) 훈련시간이 9:00~12:00 인 경우, 학습근로자가 9:25분에 도착을 하여 훈련에 참여를 했다면 훈련 참여 시간을 3시간 인정한다.

예2) 훈련시간이 9:00~12:00 인 경우, 학습근로자가 9:35분에 도착을 하여 훈련에 참여를 했다면 훈련 참여 시간을 2시간 인정한다.

3 행정사항

□ 출석인정

- 출석인정에 따른 훈련시간 인정은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적용 가능
 - 단, 보강에 대해 추가 시간을 입력 하더라도, 1일 OJT 훈련시간은 최대 5시간이 까지만 인정

□ 출석인정범위

-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훈련인정시간이 포함된 주차 LMS(학습관리시스템)에 붙임으로 제출
 - 단, 보강 시간에 대해 추가 입력을 할 때, 1일 OJT 훈련시간은 5시간이 넘지 않도록 함